

〈서식-2〉 격리면제 동의서

1. 본인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대한민국 입국 후 PCR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RAT 진단검사(7일 이내),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2. 본인은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고지받았으며 향후 이를 어길 시
관련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입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또는 RAT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중단됩니다.(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및 공무 출장 목적의 경우 예외)

3. 본인은 격리면제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것이며,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자가 또는 시설*) 조치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시설 격리 시 이용료 본인 부담(1일 최대 12만원)

4.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1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진단검사 거부, 능동감시 의무
불이행,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의무 불이행, 격리조치 거부 등),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 퇴거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 ○ 부 장관 귀하
주 ○ ○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서식-4〉 격 리 면 제 서

[원본]

격리면제자	성명	성별	[] 남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본인)	
	체류자격(외국인만)	한국내 긴급연락처 (초청기업, 가족 등)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직업(직장/직위명)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출발국가	출발일 및 편명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출국예정일	행사장소(장례식장 등)	
	격리면제사유 첨부서류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 등) 목적, 학술·공익·인도적 목적 등에 대한 상세사유 적시 ※ 격리면제신청서 중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뒷면 첨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위의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후 7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한 바, 담당관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국 후 격리면제를 허가합니다.

※ 주의사항

- 동 면제서는 1회에 한해 인정되며,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국 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입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또는 RAT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중단됩니다.(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및 공무 출장 목적의 경우 예외)
- **대한민국 입국 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최대 1박2일 대기), 음성일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입국 후 진단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또는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면제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되며, 기존 격리수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해야 합니다.
- 격리면제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대로 이행해야 하며,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면제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조치되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동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거나 강제퇴거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할 경우, 면제서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신고한 후 방역절차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만 7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 또는 시설(자기부담 최대12만원)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면제서
발급자

(직급)

(성함)

(연락처/이메일)

년 월 일

○○부 장관 · 주○○대한민국 대사(총영사)관

직인

〈서식-5〉 격리면제자 정보

① 연 번	② 신 청 부 처	③ 성 명	④ 성 별	⑤ 국 적	⑥ 생 년 월 일	⑦ 여 권 번 호	⑧ 연 락 처 (본 인)	⑨ e 메 일 (본 인)	⑩ 체 류 자 격	⑪ 인 급 연 락 처 (초 청 기 업, 가족 등)	⑫ 한 국 내 주 소	⑬ 직 업 (직 장)	⑭ 초 청 기 업	⑮ 초 청 기 업 당 당 자 연 락 처	⑯ 출 발 국 가	⑰ 출 발 일	⑱ 항 공 편 명	⑲ 입 국 예 정 일	⑳ 출 국 예 정 일	㉑ 격 리 면 제 시 작 일	㉒ 1 격 리 면 제 종 료 일	㉓ 면 제 사 유	㉔ 면 제 상 세 사 유	㉕ 면 제 서 발 급 기 관	㉖ 발 급 국 가
예 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홍 길 동	남	100 대 한 민 국	197 00 01	M1 234 456 78	010 -12 34- 567 8	gilc ong@e mail.co m	한 국	010 -98 76- 543 2	서울 시 중 로 구 도 령 동	(주) 가 나 물 산	(주) 다 라 테 크	010 -00 00- 000 0	미 국	202 01 12	KE 12	202 01 13	202 01 30	202 01 15	202 01 29	01 중 요 한 사 업 상 목 적 (계 약 투 자 등)		주 로 스 앤 켈 레 스 총 영 사 관	미 국

※ 엑셀 서식 활용/ 한국내 주소 상세 기재 / 연락처는 한국내 전화번호 기재
면제사유가 '기타'인 경우 면제상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미접종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01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02 중요한 사업상 목적(교류확대 가능 국가 입국지만 기재) 03 학술 공익적 목적 04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05 국외출장 공무원